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월 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지급기준을 참작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험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
상향 조정
 - 공휴일 30,000원 ⇒ 공휴일(오전) 40,000원, 공휴일(전일) 50,000원
 - 평 일 15,000원 ⇒ 평 일 20,000원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”로 한다.

[별표] 시험수당지급기준표중 감시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당별	구 분	수 당 액	비 고
감시수당	공휴일(전일)	50,000원	
	공휴일(오전)	40,000원	
	평 일	20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[별표]

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

현 행				개 정 안		
수 당 별	구 분	금 액	비 고	구 분	금 액	비 고
출제수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채점수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문제편집 수 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문제선정 심의수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감시수당	공휴일	<u>30,000원</u>		공휴일(전일)	<u>50,000원</u>	
				공휴일(오전)	<u>40,000원</u>	
	평 일	<u>15,000원</u>		평 일	<u>20,000원</u>	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임용령

제48조(시험위원 등)①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법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출제·채점·면접시험·실기시험·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1.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.
2.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.
3.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.

⑤시험위원·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

제16조 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